

K O S T A T S t a t i s t i c s P L U S

직주불일치로 인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한승훈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hanshn@korea.kr



각 지역의 임금근로자는 몇 명이고, 이들의 임금소득은 얼마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임금근로자의 거주지역 또는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이 다르면 거주지역은 노동력 공급지역, 근무지역은 노동력 수요지역이 된다. 노동력 수요지역인 근무지역의 사업체는 노동력 공급지역 임금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직주불일치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이 지역 간에 이동한다. 지역별로는 인구와 소득의 이동 규모와 방향이 다르다. 각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 차이, 인구와 일자리 특성별 통근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역지표 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역정책 기획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 지역임금근로자와 지역소득의 측정기준과 의미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측정”

각 지역의 임금근로자는 몇 명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전국의 임금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각 지역에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근로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임금근로자의 근무지역인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모든 임금근로자가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이 같다면, 거주지역인구와 근무지역인구는 동일하다. 그러나 직주가 불일치한 통근근로자로 인해 지역별로 거주지역인구와 근무지역인구가 달라진다.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이 다른 경우를 노동시장 관점에서 보면 거주지역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지역이고, 근무지역은 노동력을 수요하는 지역이다. 근무지역에 있는 사업체는 생산활동에 투입한 노동력이 생산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이 임금은 근무지역의 임금소득이다. 지역 내 생산활동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참여해서 받은 임금소득은 거주지역의 임금소득이 된다. 이와 같이 임금근로자의 지역 내 유입은 임금소득의 지역 외 유출, 임금근로자의 지역 외 유출은 임금소득의 지역 내 유입을 가져온다.

거주지역 이동 외 직장·교육·쇼핑·관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해서 인구를 측정하기 위해 유엔(UN)¹⁾은 거주지역인구에 더하여 서비스인구 개념을 포괄한다. 서비스인구에는 주간인구, 근무지인구, 방문인구,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유엔의 서비스인구 개념을 기초로 서울시와 통계청은 생활인구를 측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목적은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고, 통계청의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근무지역인구는 서비스인구와 생활인구 중 직장으로 인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한 개념으로, 거주지역인구에 다른 거주지역에서 지역 내로 통근하는 유입인구를 더하고,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유출인구를 차감해서 구한다.

지역소득통계는 유엔과 유럽통계국(Eurostat)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다. 생산물의

1) UN(201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cus Revision 3, pp. 176-182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지역내총생산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중 임금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총소득이 작성된다. 지역총소득 중 지역민의 소득인 거주지역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근무지역 임금소득에서 거주지역인구가 다른 지역에서 받은 임금소득을 더하고, 다른 지역 인구가 지역 내에서 받은 임금소득을 차감해서 구한다.

통근을 반영한 인구나 지역소득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통근을 반영한 인구나 지역소득계정

구분	근무지역	거주지역	관계
인구	근무지역인구	거주지역인구	근무지역인구=거주지역인구+지역 내 유입인구-지역 외 유출인구
임금소득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거주지역임금소득=근무지역임금소득+지역 내 유입임금소득-지역 외 유출임금소득

자료: UN(2017)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Eurostat(2013) Manual on regional accounts methods 등을 참고해 정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은 어떤 조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면 근무지역인구와 지역민의 임금 소득 총액이 증가한다. 증가한 모든 일자리에서 지역민이 일한다면, 증가한 일자리만큼 거주 지역 임금근로자가 증가한다. 그러나 직주불일치로 인한 통근이 발생하면, 일자리 증가 규모와 거주지역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가 달라지고, 지역 내 일자리에서 발생한 임금소득 중 일부가 다른 지역 주민의 소득이 된다. 또한 다른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사업체의 고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 1인당 거주지역 임금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즉, 통근으로 인해 지역 일자리 증가 효과가 그대로 거주지역 임금근로자나 임금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통계청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공표부터 지역활동인구 개념을 도입하였다. 지역활동인구는 거주지역 인구에 통근을 반영한 근무지역인구이다. 여기에서는 2022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이용해 통근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 차이, 임금근로자의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근율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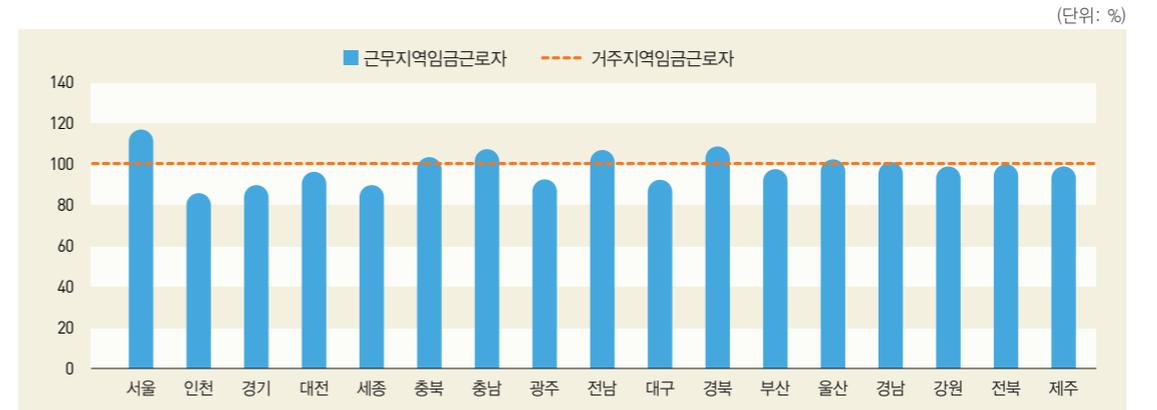
II.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수도권은 서울로 순유입, 비수도권은 도지역으로 순유입”

임금근로자의 통근은 지역 내 거주 임금근로자가 다른 근무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 외 유출과 지역 외 거주 임금근로자가 지역 내 사업체로 이동하는 지역 내 유입으로 나뉜다. 순유입은 지역 내 유입에서 지역 외 유출을 차감해서 구한다. 전국 수준에서는 유출과 유입 규모가 같고, 순유입은 '0'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유출과 유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임금근로자와 근무 지역 임금근로자 규모가 달라진다.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유출률과 유입률은 각각 거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지역 외 유출 비율과 근무지역 임금근로자 중 지역 내 유입 비율로 구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21,684천 명) 중 통근근로자(3,166천 명)의 비율인 통근율은 14.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유출률과 유입률을 높은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권인 세종시이고,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낮은 지역이었다. 통근율이 낮은 세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어 거주지역 임금근로자보다 근무지역 임금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시, 비수도권은 도지역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유일하게 순유입 지역이었다. 반대로 순유출 지역은 수도권은 인천시와 경기도, 비수도권의 경우는 광역시이다. <그림 1>은 시도별로 거주지역임금 근로자 대비 근무지역 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여 준다.

[그림 1] 거주지역 임금근로자 대비 근무지역 임금근로자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통근근로자의 이동 방향은 수도권은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순유입되었고, 비수도권은 대체로 거점도시인 광역시에서 인근 도지역으로 순유입되었다. 경상남도에서 울산시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고, 울산시에서 경상북도로 순유입되었다. 거점도시인 특광역시가 두 곳인 수도권과 충청권은 규모가 작은 인천시와 세종시에서 각각 서울시와 대전시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었다. 다만 규모가 큰 부산시에서 울산시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기도 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50천 명) 되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충청남도로 순유입(22천 명)이 많았다.

[표 2]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단위: 천 명)

	거주지	근무지	순유입	다른 거주지에서 유입				다른 근무지역으로 유출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서울	4,203	4,952	749	1,389	1,188 (경기)	178 (인천)	7 (충남)	640	534 (경기)	66 (인천)	12 (충남)
인천	1,333	1,144	-189	190	121 (경기)	66 (서울)	1 (충남)	379	197 (경기)	178 (서울)	2 (충남)
경기	6,157	5,540	-618	778	534 (서울)	197 (인천)	23 (충남)	1,395	1,188 (서울)	121 (인천)	45 (충남)
대전	655	632	-22	55	29 (세종)	9 (충남)	6 (충북)	77	31 (충남)	20 (세종)	17 (충북)
세종	165	148	-16	46	20 (대전)	8 (충남)	8 (충남)	62	29 (대전)	14 (충남)	13 (충북)
충북	670	698	28	64	17 (대전)	16 (경기)	13 (세종)	36	8 (경기)	8 (충남)	8 (세종)
충남	871	932	61	116	45 (경기)	31 (대전)	14 (세종)	55	23 (경기)	9 (대전)	8 (세종)
광주	592	547	-45	25	20 (전남)	1 (전북)	1 (서울)	70	63 (전남)	4 (전북)	1 (경기)
전남	621	667	46	71	63 (광주)	3 (전북)	1 (경기)	25	20 (광주)	2 (전북)	2 (경남)
대구	970	896	-74	43	37 (경북)	2 (경남)	2 (서울)	116	107 (경북)	7 (경남)	1 (부산)
경북	939	1,023	84	129	107 (대구)	15 (울산)	2 (부산)	45	37 (대구)	3 (울산)	2 (경남)
부산	1,286	1,255	-30	87	76 (경남)	7 (울산)	2 (경기)	117	93 (경남)	21 (울산)	2 (경북)
경남	1,217	1,233	16	109	93 (부산)	7 (대구)	4 (울산)	93	76 (부산)	11 (울산)	2 (대구)
울산	490	499	10	36	21 (부산)	11 (경남)	3 (경북)	26	15 (경북)	7 (부산)	4 (경남)
강원	591	588	-2	17	8 (경기)	6 (서울)	3 (충북)	19	10 (경기)	5 (서울)	3 (충북)
전북	645	648	2	13	4 (광주)	2 (서울)	2 (전남)	11	4 (충남)	3 (전남)	1 (광주)
제주	280	280	-1	-	-	-	-	1	0	0	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III.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수도권은 인천시·경기로 순유입, 비수도권은 광역시로 순유입”

전체 임금소득 중 임금소득 지역 간 이동 비율은 18.2%였다. 임금소득은 임금근로자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수도권은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로, 비수도권은 대체로 도지역에서 광역시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울산시에서 부산시와 경상남도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경상북도에서 울산시로 순유입되었다.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890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표 3]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방향

(단위: 십억 원)

	거주지	근무지	순유입	다른 근무지역에서 유입				다른 거주지역으로 유출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서울	13,850	16,585	-2,735	2,478	2,060 (경기)	250 (인천)	44 (충남)	5,213	4,506 (경기)	612 (인천)	28 (충남)
인천	3,753	3,175	578	1,271	646 (경기)	612 (서울)	5 (충남)	693	436 (경기)	250 (서울)	3 (충남)
경기	18,910	16,505	2,406	5,278	4,506 (서울)	436 (인천)	179 (충남)	2,873	2,060 (서울)	646 (인천)	90 (충남)
대전	1,928	1,884	44	269	112 (충남)	67 (세종)	54 (충북)	225	126 (세종)	29 (충남)	24 (경기)
세종	586	487	99	260	126 (대전)	56 (충남)	54 (충남)	162	67 (대전)	28 (서울)	27 (충북)
충북	1,834	1,947	-113	126	29 (경기)	29 (충남)	27 (세종)	239	61 (경기)	56 (세종)	54 (대전)
충남	2,471	2,710	-239	199	90 (경기)	29 (대전)	28 (서울)	438	179 (경기)	112 (대전)	54 (세종)
광주	1,650	1,480	170	249	224 (전남)	16 (전북)	4 (경기)	79	62 (전남)	5 (전북)	3 (서울)
전남	1,612	1,787	-174	75	62 (광주)	6 (경남)	5 (전북)	250	224 (광주)	10 (전북)	6 (경기)
대구	2,586	2,320	266	391	360 (경북)	21 (경남)	4 (부산)	125	106 (경북)	6 (경남)	6 (서울)
경북	2,553	2,862	-309	135	106 (대구)	13 (울산)	5 (경남)	444	360 (대구)	53 (울산)	8 (부산)
부산	3,369	3,247	122	407	309 (경남)	85 (울산)	8 (경북)	286	241 (경남)	25 (울산)	11 (경기)
경남	3,373	3,431	-59	303	241 (부산)	41 (울산)	6 (대구)	362	309 (부산)	21 (대구)	11 (울산)
울산	1,534	1,584	-50	91	53 (경북)	25 (부산)	11 (경남)	141	85 (부산)	41 (경남)	13 (경북)
강원	1,493	1,487	7	65	29 (경기)	20 (서울)	10 (충북)	58	24 (경기)	23 (서울)	9 (충북)
전북	1,630	1,643	-13	35	12 (충남)	10 (전남)	5 (광주)	48	16 (광주)	7 (대전)	6 (서울)
제주	709	707	2	2	1	1	0	-	-	-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IV.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비교

“통근근로자가 비통근근로자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음”

거주지역인구에서 지역 외 유출인구를 차감하면 비통근인구가 되므로, 근무지역인구는 비통근근로자와 지역 내 유입인구의 합이다.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임금소득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과 지역 내로 유입된 임금소득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표 4>는 이런 관계를 활용해 작성한 표이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94만 원이었다.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각각 367만 원과 282만 원으로, 통근근로자가 비통근근로자보다 약 30%가 더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통근근로자가 유입과 유출 모두에서 비통근근로자보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높았다. 앞에서 임금근로자의 통근율(14.6%)에 비해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비율(18.2%)이 더 높은 것은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 차이에 기인한다.

[표 4]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시도	비통근 ¹⁾	근무지역		거주지역		시도	비통근 ¹⁾	근무지역		거주지역	
		전체	통근 ²⁾ (유입)	전체	통근 ³⁾ (유출)			전체	통근 ²⁾ (유입)	전체	통근 ³⁾ (유출)
서울	319	335	375	329	387	대구	257	259	293	267	336
인천	260	278	365	281	335	경북	271	280	343	272	296
경기	286	298	369	307	378	부산	254	259	328	262	347
대전	287	298	410	295	349	경남	273	278	332	277	326
세종	317	328	353	356	420	울산	311	317	392	313	348
충북	269	279	375	274	354	강원	250	253	347	253	342
충남	278	291	377	284	363	전북	251	254	367	253	327
광주	268	270	320	278	357	제주	253	253	-	253	317
전남	258	268	352	260	307	전국	282	294	367	294	367

주: 1) 주거지역과 근무지역이 동일 시도인 경우
 2) 다른 주거지역에서 유출되어, 해당 지역으로 유입
 3) 해당 지역에서 유출되어, 다른 근무지역으로 유입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소득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더 높음”

임금근로자의 통근이 많은 시도를 권역별로 묶어서 개인과 일자리 특성별 통근율을 <표 5>에서 비교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보다 남성,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시간제보다 전일 임금근로자,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일시일용직보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았다. 통근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비통근근로자보다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근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통근율은 20.6%로 충청권(9.7%) 등 다른 권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여성 등 상대적으로 통근율이 낮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는 남성 등 상대적으로 통근율이 높은 비수도권 임금근로자보다 통근율이 높았다. 수도권 여성의 통근율은 16.2%로 비수도권에서 통근율이 가장 높은 충청권 남성 통근율 12.4%보다 높았다. 이런 특성은 교육 정도 등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5]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통근율

(단위: %)

개인·일자리 특성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전체			20.6	9.7	7.8	8.5	8.4
개인	성별	남성	24.3	12.4	9.5	10.7	11.6
		여성	16.2	6.3	5.7	5.8	4.5
	교육 정도	고졸 이하	14.1	6.2	4.6	6.1	7.2
		초대졸 이상	25.7	13.0	10.9	10.7	9.7
일자리	근속기간	4년 이하	18.8	8.1	6.5	7.5	7.3
		9~5년	22.7	11.1	7.7	9.6	9.6
		10년 이상	25.3	13.6	11.1	10.3	10.9
	근로시간	전일제	21.4	10.5	9.2	9.1	9.4
		시간제	19.5	8.7	5.0	7.2	7.3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15.8	6.1	5.3	6.7	6.0
299~10명		21.3	10.6	9.1	9.2	9.2	
300명 이상		28.2	14.0	9.9	10.7	1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9	11.3	9.4	9.7	9.8	
	임시일용직	14.1	4.9	4.2	5.5	5.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2년 하반기)

V. 지역지표의 측정 대상과 결과를 지역정책에 반영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서 지역별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은 인구의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두 기준의 측정값은 직주불일치로 인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매개로 연결된다.

둘째, 임금근로자와 소득의 지역 간 이동은 주로 한두 개의 거점도시와 주변 도지역 간에 발생하였다. 다만 울산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외에 경상북도와도 유의미한 이동이 있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도 이동이 많았다.

셋째,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은 거주지역과 근무지역 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임금근로자 유출지역은 임금소득 유입지역이 된다. 이동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달랐다. 거점도시가 두 곳인 지역들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넷째, 성별 등의 특성이 통근 여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통근 여부에 따른 임금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도권에서 통근율이 낮은 특성을 지닌 임금근로자가 다른 지역의 통근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 경우보다 통근율이 더 높은 현상도 발견됐다.

지역별로 거주지역과 근무지역 기준의 임금근로자 규모와 임금소득이 다르고, 이들의 이동 방향과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일정한 경향성을 띠면서도 개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 정책을 기획할 때 어떤 기준의 인구나 소득을 정책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지역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주불일치로 인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로 전국 약 23만 1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22. 10. 9. ~ 10. 15.(1주간)이다.
 - 지역 간 이동을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사업체 소재지)이 다른 경우로 정의함
 - 임금소득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임